

가-94-19

수용자 연수교재

인권 자료실		
분류인	번호	일련번호
	B-14	//

인권정보자료실
CPh1.10

언론관련법과 수용자운동

林 炳 國

(언론중재위원회 관리실장)

한국언론연구원

인권정보자료실
CPh1.10

가-94-19

수용자 연수교재

언론관련법과 수용자운동

林 炳 國 ·

(언론중재위원회 관리실장)

참여연대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번호

한국언론연구원

차 례

1. 머리말 3
2. 언론보도와 타법외과의 충돌모습 6
3. 언론보도와 윤리·법적 환경 8
4. 사례 : 언론사의 책임과 면책사유 19
5. 맺는말 43

1. 머 리 말

언론은 정보를 생산·전파해서 국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그 기능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특히 정보화 시대라고 일컫는 현대 사회에서 언론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더욱 크다고 하겠다.

오늘날 언론은 내외적으로 여러가지의 변화된 환경에 놓여 있다. 언론의 내적 변화로는,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대량생산·대량보급이 가능해 졌고, 자본의 축적으로 언론기업이 거대화·독점화하여 정보의 독점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매체의 급증은 언론사간의 살아남기 경쟁을 치열하게 만들고 있다. 한편, 언론의 외적 변화로는 독·시청자인 정보소비자의 언론에 대한 시각변화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언론의 환경변화현상들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독·시청자 즉 정보수용자의 언론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의 변화이다. 그동안 우리의 언론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아니든 간에 언론 소비자를 <계몽>의 대상으로 삼아온 측면이 없지 않다. 진실의 여부는 제쳐두고라도 우리 언론은 한말에는 <개화의 선구자>로서, 일제하에서는 <독립투쟁의 언론>으로, 이승만 정권하에서는 <반독재투쟁의 언론>으로, 박정희 정권하에서는 <반민주 투쟁의 언론>으로서 스스로 자리매김을 해왔는가¹⁾하면, 소비자들은

주 1) 김정탁, "새로운 환경에서의 변화하는 수용자" 제4회 최병우 기자 기념심포지엄 「언론의 환경변화와 새로운 방향모색」 1992. 10. 관훈클럽·한국언론학회, P.15.

신문독자운동을 전개했는데 1) 60년대에는 언론윤리위원회법 반대운동, 2) 70년대에는 자유언론선언 및 동아광고격려 시민운동, 3) 80년대에는 제도언론, 권언복합체언론에 대한 저항운동, 4) 90년대에는 스포츠신문의 비윤리성에 대한 독자운동이 전개되었다.²⁾ 한편, 전파매체에 대한 수용자운동은 방송내용에 대한 거부반응이 쌓이다가 「KBS시청료납부 거부운동」이 있었는가 하면, 93년에는 「TV끄기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렇게 볼 때, 언론에 대한 수용자운동은 대체적으로 90년대전까지는 언론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나,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전보다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 까닭은 국민이 언론을 '권력으로부터 탄압받는 언론', 또는 '민주화를 위한 동반자'로 인식했으나, 민주화 이후에는 '언론기업의 거대화', '언론의 권력화', '언론정보의 왜곡화', '사이비기자의 권익침해 행위' 등에 눈을 돌려 새로운 언론관이 싹튼데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권력)와 언론이라는 2원적 체계만 강조된 반면에 국가의 주인인 국민은 처음부터 무시된 왜곡된 가치체계가 지속되었기 때문인데, 최근에는 정부, 언론 그리고 국민이 동일한 힘을 갖는 체계가 정립되는 새로운 기운이 싹트고 있음을 볼 수 있어서, 건전한 민주사회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하겠다.

언론의 역기능적 구조요소와 살아남기 경쟁은 언론보도를 상업

주 2) 김기태, "신문독자운동 사례연구" 저널리즘 1991. 봄, PP.233-240 참조.

주의로 흐르게 하고, 그 결과 '잘못된 보도'가 일어나기도 한다. 그래서 언론이 존재하는 한, '잘못된 보도' 즉 '오보'는 숙명적이라는 말도 있다. 오보는 정보소비자에게 불량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이익을 초래케하고, 언론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 언론의 존재바탕이 되는 정보수용자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불건전한 여론을 형성케함으로써 민주사회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며, 그리고 타법외과의 충돌은 법정투쟁으로까지 비화되기도 한다.

따라서, 언론사는 언론활동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오보를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장치를 두고 있다. 언론사 내적으로는 기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명기사'제도를 확대중이고, 정보소비자와의 쌍방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불만을 해소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음부즈맨제도, 독자모니터제도 그리고 독자상담전화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언론사 외적으로는 소비자단체들이 언론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고 있고, 신문계 스스로는 신문윤리위원회를 두어 보도내용을 심의하거나 독자의 불만을 접수·처리하고 있고, 방송은 방송위원회가 방송내용을 심의하여 제재를 가하거나 시청자의 불만을 해결해 주고 있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는 법원의 전치기관으로서 언론보도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고 기사를 심의하여 그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언론계 내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보에 의한 분쟁은 그치지 않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되는 중재신청사

건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89년도 121건, '90년도 159건, '91년도 220건, '92년도 381건, '93. 8. 현재 310건), 법원제소건수 역시 많은 동시에 손해배상금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명예훼손소송으로 인해 어떤 월간잡지와 주간신문은 자진 폐간하기도 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정부, 언론, 그리고 국민이 서로 균등한 힘을 가질 때 민주사회가 성숙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은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되고, 언론 또한 타법익을 침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헌법 21조 1항은 언론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동조 4항은 언론이 그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언론, 정부, 그리고 국민이 공존할 수 있는 상호간의 권리한계를 법적인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그래서 언론보도와 타법익과의 충돌모습, 언론 보도와 법적·윤리적 환경, 그리고 사례를 통한 언론사의 책임과 면책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2. 언론보도와 타법익과의 충돌모습

보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하나의 기본권이지만, 타법익 즉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개인적 법익과 충돌하여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타법익과의 충돌모습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가. 국가적 법익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란 국가의 존립과 권위 또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를 말한다.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사범과 관련된 조항을 내란죄, 외환죄, 국교에 관한 죄 등이 있는 형법과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안법, 군사시설보호법 등이 있다.

나. 사회적 법익

사회적 법익은 사회공공의 평온한 생활과 행복추구를 위한 생활의 보호에 관해 법적 조치가 강구되는 분야로서, 언론과 관계가 깊은 것은 공공의 질서유지와 선량한 풍습의 보호 등을 들 수 있다. 즉 형법의 음란물죄가 있다. 그리고 공명선거를 위한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등이 언론보도와 관련이 있다.

다. 개인적 법익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란 개인의 생명·신체, 자유, 명예·신용, 사생활의 평온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를 말한다.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에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자유에 대한 죄,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및 재산에 대한 죄 등이 있는데, 언론활동과 관련이 깊은 것은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와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이다.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며, 명예에 관한 죄와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가 여기에 해당한다.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에는 비밀침해의 죄와 주거침입의 죄가 있다.

3. 언론보도와 윤리·법적 환경

보도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윤리강령과 법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윤리강령은 각 언론사나 언론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침을 정해서 언론활동에 활용되고 있고, 법은 자율규제의 한계를 벗어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타율적으로 기능한다. 언론인이 그들 스스로 제정한 윤리강령을 잘 지킨다면 법에 의한 타율적 규제가 불필요함을 알 수 있다.

언론보도와 관련된 윤리강령과 법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윤리강령

90년대에 들어와 언론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높아지자 언론사들은 개별적으로 윤리강령을 채택했다. 한겨레신문사가 1988년 5월에 창간하면서 윤리강령을 마련했고, 그후 MBC(1990. 6), KBS(1990. 1), 동아일보(1991. 3), SBS(1991. 3), 부산일보(1991. 9), 대전일보(1991. 10)등이 윤리강령을 만들었다.

윤리강령에는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내용도 있지만, 1) 취재방

법, 2) 보도의 정확성·공정성·진실성, 3) 명예·사생활의 보호, 4) 취재원의 보호, 5) 취재자료의 이용 등 보도활동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언론이 윤리강령에 명시된 사항들을 충실히 준수한다면, 언론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법익과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윤리강령 가운데 보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깊은 사항들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취재방법과 관련된 사항

- 담합이나 풀(pool)취재는 원칙적으로 배제
- 개인의 주거나 사무실에 무단출입 배제
- 본인의 동의하에 전화대화 녹음-단, 명백한 범법행위를 추적시에는 제외
- 마이크와 카메라의 비밀사용금지를 원칙
- 인터뷰내용의 왜곡보도 배제
- 입원환자에 대한 취재에 신중
- 정부나 공공기관, 단체, 기업 등의 제공정보는 진실여부 확인
- 다른 매체에 보도된 내용의 표절 금지
- 타인의 자료는 출처명시
- 취재원에게 금품불요청 또는 금지
- 취재원에게 특권불요청 또는 거부

2) 보도와 관련된 사항

- 정확한 보도와 공정한 논평

- 소문에 근거한 기사의 보도자제
- 상업주의·선정주의 언론의 배제
- 광고주나 부정이익단체의 압력배제
- 명예나 사생활침해 보도에 신중-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 제외
- 무죄추정의 원칙 고수-현행범의 경우는 제외
- 법원의 판결, 공적 기관의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에 신중
- 전과사실에 비닉 원칙
- 미성년자에 대한 보도금지사항 준수
- 용의자나 범인의 주변인물에 대한 보도에 신중
- 특정정당이나 종교 및 종파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음

3) 오보에 대한 조치와 관련된 사항

- 신속한 정정
- 반론기회의 부여

나. 보도와 관련되는 법

보도와 관련되는 법은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그리고 개인적 법익에 관한 것들이 있다. 헌법 및 기타 법규를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1) 헌법

제16조(주거의 보장)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

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통신의 비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양심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등, 언론·출판에 의한 피해배상) 제1항 :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4항 :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등) 제1조 :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항 :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2)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1항 : 공언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만5천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만5천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1항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만5천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 전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2항 :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만5천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1항 :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만5천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1조(주거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1조 :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제1항 :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업무에 종사하게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 사용자에게 같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제3항 :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64조(명예훼손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같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4) 가사소송법

제10조(보도금지) 가정법원에서 처리중에 있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연령·직업·용모등에 의하여 그 본인임을 추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잡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

제72조(보도금지위반죄)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금고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소년법

제68조(보도금지) 제1항: 이 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심리중에 있는 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용모등에 의하여 그 당사자가 당해 본인으로 추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 또는 방송할 수 없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신문지에 있어서는 편집인과 발행인, 기타 출판물에 있어서는 저작자와 발행자, 방송에 있어서는 방송편집인과 방송인을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리) 1.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동일한 제호로 연 1회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통신·잡지·기타 간행물을 말한다.

제16조(정정보도청구권) 제1항: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공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일간신문, 통신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밖의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1월 이내에 서면으로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정정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정정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의 대상인 기사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정정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항: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정정보도게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 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일간신문과 주1회이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및 통신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일 이내에 같은 정기간행물에, 그 밖의 정기간행물은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발행호에 이를 무료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상당한 이익을 갖지 않은 경우나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제4항: 정정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제5항: 정정보도의 내용은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게재할 수 없으며, 정정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

제6항: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

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기사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언론중재위원회) 제1항 : 정정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고, 정기간행물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중재절차등) 제5항 : 제4항의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중재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며,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 내용대로 정정기사를 게재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항 :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7항 : 중재는 중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중재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정정보도청구사건의 심판) 제1항 :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의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중재가 성립되지 아니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3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 제3항 내지 제5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보도의 게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697조 및 제705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추후보도청구권) 제1항 : 정기간행물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유죄판결이외의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서면으로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이 사실에 관한 추후 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후보도의 내용은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한다.

7) 방송법

제6장 침해에 대한 구제

제41조(정정보도청구권) 제1항 :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공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방송국의 장이나 편성책임자에게 정정보도의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 정정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의 대상인 보도내용과 방송을 요청하는 정정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항 : 방송국의 장 또는 편성책임자가 행하는 정정보도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동일한 주파수에 의해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42조(다른 법률의 준용) 방송에 관한 정정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의 중재와 그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항 및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8) 종합유선방송법

제5장 침해에 대한 구제

제45조(정정보도청구권) 제1항 : 종합유선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공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종합유선방송국의 장이나 편성책임자에게 정정보도의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

제6항 : 종합유선방송국의 장 또는 편성책임자가 행하는 정정보도는 그 공표가 행하여진 것과 동일한 채널 및 시간대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7항 : 제1항의 정정보도청구에 프로그램공급자가 함께 관련되어 있을 때에는 당해 프로그램공급자도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정정보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항 : 종합유선방송에 정정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의 중재와 그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 대한 사항 및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사례 : 언론사의 책임과 면책 사유

가. 언론사의 책임

1) 보도금지 사항

소년법과 가사소송법은 그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에 관한 사실이나 사진 등을 보도하여 본인임을 능히 짐작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보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사례 1) 미성년피의자의 모습을 방송

○○○ TV는 “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오늘 복면을 하고 미장원에 침해해서 현금과 수표 45만원을 빼앗은 서울 모 고등학교 3학년 송모군등 교교생 4명을 붙잡아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라는 취지의 보도를 하면서, 미성년피의자의 모습을 본인으로 알 수 있도록 클로즈업한 화면을 방영했다.

방송위원회는 이 보도에 대해 ‘주의’ 결정(’91. 5. 25)을 했다.

사례 2) 미성년피의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

○○○ TV는 “철도사건 피의자인 국민학교 6학년 전모군에 대한 강압수사에 의혹이 일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면서, 미성년인 피의자의 신분이 기록된 서류가 인지 가능하도록 클로즈업해서 방영했다.

방송위원회는 이 보도에 대해 ‘주의’ 결정(’91. 11. 20)을 했다.

2) 형사상의 명예훼손죄

명예란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가지는 가치를 말한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면 족하다고 해야 한다. 본죄는 추상적 위협범이기 때문이다.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즉 언어에 의하건, 문서·도화에 의하건, 신문·잡지·통신·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건 묻지 않는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적합한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미필적 고의로 족하다. 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거증책임은 피고에게 지우는 '거증책임의 전환'이 통설이다.

본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다만,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간접정범에 의하여도 범하여 질 수 있다. 따라서 사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허위의 기사를 제공하여 신문에 보도케 한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한다.

형사상의 처벌은 행위자에 대한 응보 또는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해악의 발생을 방지할 목적으로 행위자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민사상의 금전적 배상이나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사례 1)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 피고인은 국제종교문제연구소장으로 종사하면서 '성별'이란 종교잡지 월간지를 발행하는 자인 바, 대한예수교 장로회 호헌총회장 박병훈을 비방할 목적으로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박병훈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다.」 「주문: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벌금 20만원에 처한다.」(서울지법 북부지원 1982. 7. 14 명령 82고약 6184)

사례 2)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 ○○일보 문화부에 찾아가 ...내용의 허위 사실을 설명하고, 민사소송소장 사본, 전속계약서 사본 등의 보도자료를 교부하여 ... 위 같은 허위의 기사를 게재하게 하여 그 무렵 전국의 위 신문독자들에게 보급되게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주문: 피고를 징역1년에 처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서울지법 남부지원 1993. 9. 14 선고 91고단 4554)

사례 3)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동인들(필자주: 원고들)을 위 위원회에서 제명한 다음 이를 각 언론사에 홍보하기로 공모한 다음 동인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 ○○○는 1990년 5월 30일 한국권투위원회 총회를 앞두고 ○○○회장은 물러나야한다는 등 갖은 협박을 하여 동인 등으로 부터 2천만원을 갈취하였으며 한국권투위원회 상벌위원회에서는 참석위원 전원이 이들의 제명에 동의하였고 검찰에 이를 고발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 14개 언론기관 프로권투 담당기자들에게 모사전송기를 통해 송부하여서 ...취지의 기사가 각 게재되게 하여서 출판물에 의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동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살피건대 형법 제31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 등에 의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309조 제1항이 규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 바, 이 사건

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에 위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이 없다할 것이어서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백만원에 처한다)과 같이 판시한다.»(서울 형사지법 1992. 5. 26선고 91고단 61158)

사례 4)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진을 교부하여 게재케 했고, 주위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명예훼손-징역 10월

「...이에 관련된 자료사진을 제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특전사령부에 근무할 당시에 입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1969. 6. 16. 경 흑산도 대간첩작전에 참가한 피해자 ○○○등이 작전종료 후 사살한 무장공비 및 노획물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기념촬영한 사진 1매」를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자신이 직접 특전사령부 요원으로 광주현장에서 촬영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위 ○○○에게 교부하였던 사실, 이 사건 사진이 위 잡지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화보의 일부로 게재될 경우 마치 위 피해자들이 1980. 5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수부대원으로 광주에 출동하여 광주시민을 사살하고 사살된 시민들의 앞에서 기념촬영을 한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진을 위 ○○○에게 교부할 당시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 사람의 성명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게재된 기사나 영상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위 법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3) 정정보도청구권

언론 침해의 경우에 일반적인 법적 구제제도로는, 첫째 고의 또는 과실등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고 손해 기타 법익의 침해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필요하며, 둘째 그 구제절차인 소송제도의 성질상 신속한 구제를 기대하기 어렵고, 셋째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에도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이고 간편한 구제방법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신속하게 해주기 위하여 정정보도청구권제도가 설치되었다.

정정보도청구권제도의 특징은, 첫째 언론의 고의·과실 등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고, 둘째 보도된 사실적 주장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으며, 셋째 신속한 절차의 진행을 위해서 가처분절차에 따라 재판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제목의 표현과는 달리...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위 권리의 제목이 정정보도청구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며 ‘반박보도청구권’이라고 표현하였어야 옳을 것이다”라고 판결(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 1973)해서, 정정보도청구권은 정정권이 아니라 반론권인 반박보도청구권이라고 하겠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일보사의 헌법소원에 대해 “...현행 정정보도청구권제도는 그 명칭에 불구하고 피해자의 반론게재청구권으로 해석되고 이는 언론의 자유와는 비록 서로 상충되는 면이 없지 아니하나 전체적으로는 상충되는 기본권사이에 합리적 조화

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 1991. 9. 16. 결정 89헌마 165).

정정보도청구권의 성립요건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정정보도청구권의 대상은 정기간행물의 공표된 ‘사실적 주장’이다. ‘정기간행물’이란 동일한 제호로 연 1회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 통신 잡지 기타 간행물을 말한다. 그리고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사실을 말한다. 따라서,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인 이상 그 형식이 독자투고이든, 취재방법이 타기관의 공문이나 경찰기록 및 경찰관의 의견에 의존하든 간에 정정보도의 청구대상이 된다. 그러나 광고는 광고주의 주장이지 언론의 사실적 주장이 아니고, 요금 지불면에서 광고와 정정보도는 서로 달라 무기대등의 원칙에 위반하므로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정보도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 ‘피해를 받았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를 입었다’는 의미는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음을 말한다.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자연인 이외에도 법인이 포함됨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사회생활상 하나의 단위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개체인 경우에는 그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서울민사지법 1983. 11. 25. 선고 83카 22003)

신청인이 정정보도청구권행사의외에도 사안에 따라서 다른 일반적 구제수단 즉 형사상으로 명예훼손에 의한 처벌을 요구하거나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위자료)또는 피해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데, 굳이 정정보도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런데 판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손해배상금(위자료)의 산정에 참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례 1) 경찰기록이나 경찰관의 의견을 옮겨 보도해도 반론게재의 의무

「...위 기사는 당시의 경찰기록이나 경찰관의 의견을 그대로 옮겨 기사화한 것으로 피신청인이 고의로 허위기사를 보도한 것이 아니므로 나중에 경찰기록의 일부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신청인은 경찰기록이 부정확하여 피해를 입은 것 뿐이므로 위 기사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의 신문기사가 경찰기록이나 경찰관의 의견을 옮겨 보도하였다 하여도 일단 그 내용이 정기간행물인 ○○신문에 공표되어 사실적 주장이 되었다면 그 기사에 의해 피해를 받은 신청인은 이를 반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서울민사지법 1989. 7. 7. 선고 89카 11518, 서울고등법원 1990. 2. 6. 선고 89카 30506)

사례 2) 기자가 신청인의 가명을 사용하여 수기를 제작해서 보도해도, 기사중의 등장인물의 인적 사항이 신청인과 일치하여, 정정보도

「...신청인은 위 여성○○에 게재된 수기를 쓰거나 여성○○기자와 면담한 일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자가 위 수기를 임의로 조작하여 위 여성○○에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수

기는 신청인 ○○○가 아닌 ○○○이라는 이름으로 게재되었고 기사속의 사진도 신청인과 관계없는 사람의 사진이며 사망한 학생의 이름도 신청인의 아들인 ○○○로 표시하지 않고 정훈으로 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신청인이 가명을 사용하여 위 수기를 썼다고 오인될 염려가 없으니 신청인은 피해자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수기의 필자의 주소, 연령, 가족관계 등 인적 사항, 아파트 맨위층에 거주하는 점 등이 신청인과 일치하여 비록 필자의 성명과 학생의 성명을 다르게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인을 알거나 위 사고가 보도된 신문기사에 관심을 가졌던 독자라면 신청인이 쓴 것이라고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신청인은 피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정정보도문(반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서울민사지법 1986. 9. 26. 선고 86카 28755)

<간접강제신청에 의한 '결정문'>

주문 :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여성○○의 앞표지 우측 하단부분에 고딕체 1호활자로 「정정보도문 게재」라고 가로로 표시하고 위 여성○○의 목차란에 고딕체 1호활자로 「본지 6월호의 중3생 어머니 수기에 대한 정정보도」라고 가로로 표시하고 287면부터 293면까지의 사이의 한 면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은 상단 중앙부분에 고딕체 특호활자로 정정보도내용과 정정보도신청인 성명은 명조체 5호활자로 게재하라.

2. 만일 채무자가 전항의 이행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전항의 여성○○ 발행일의 익일부터 이행완료시까지 월 금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서울민사지법 1986. 12. 18. 결정 86카 24988)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으나 불성립되자 법원에 정정보도신청을 청구하여 인용되었고,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위자료 1,500,000원을 받았다.

사례 3) 보도내용의 인적 사항이 신청인을 지칭하여 정정보도

「...위 보도내용중 대림상가 소유주인 최모 노파(70)라는 표현은 신청인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신청인이 위 ○○○을 고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별지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정정보도문>

주식회사 ○○일보는 1989. 9. 5. 자 제10면 신호동란에 「개인상가 단속원의 횡포」라는 제목아래 대림상가소유주인 최모 노파(70)는 단속원 ○○○을 고용하여 완력으로 위대림상가 주변의 노점상들을 단속시켜 오고 있다 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는데, 위 보도중 대림상가 소유주 최모 노파(70)는 ○○○를 지칭한 것으로써 ○○○가 단속원 ○○○을 고용하였다는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신청인 ○○○

사례 4) 반론문과 정정보도를 게재하여 위자료산정에 참작

「...원고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조

치를 취하자 1991년 3월 21자에 같은 난 기사말미에 원고의 반론을 게재하고 또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같은 해 4월 12일자 같은 난 기사말미에 이 사건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정정기사를 게재한 점,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금2천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서울민사지법 1991. 12. 27. 판결 91가합 52469)

4) 추후보도청구권

정기간행물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유죄판결이외의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추후보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은 당해 형사절차가 종결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다. 따라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불기소처분의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월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추후보도의 내용은 청구인의 권리나 명예회복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정정보도의 범위가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는 점과 대비된다.

사례 1) 사기 및 의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고 보도했으나, 무죄확정판결로 추후보도문 게재

「○○○씨 무죄확정 일가족 도사 사기사건」제하의 기사, “지난 90년 11월 28일자 본보 15면에 보도된 『만병치료 속여 1억 챙겨』제목의 ○○○씨(44, 대구시 북구 ○○2동 500-59) 김○○씨(42), 아들(12)등 일가족

도사사기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됐다. 전씨등 일가족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소문을 퍼뜨려 4천여명으로 부터 1억여원을 치료비명목으로 받아 사기 및 의료법위반혐의로 대구북부 경찰서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이 사건은 그후 전씨만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으로 기소됐고 부인과 아들은 불기소 됐는데 전씨는 1,2심에서 각각 무죄가 선고됐고 지난 3월 10일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 무죄확정판결을 내렸다.”(92 대구 중재2)

사례 2)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여 구속되었다고 보도했으나, 무죄확정 판결이 나서, 추후보도문 게재

「『북침주장 조○○씨 상고기각 무죄확정』제하의 기사, “대법원 형사2부(주심 최○○ 대법관)는 18일 북침설을 주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 인덕공고 교사 조○○씨(36)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92서울중재 58)

5) 민사상의 불법행위의 책임

가) 손해배상(위자료)

민사상의 손해배상은 피해자에게 생긴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고 행위자의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형사상의 책임은 고의범만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사상의 책임은 고의·과실이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모두 배상할 책임을 묻는다.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

를 가하는 행위로서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된다. '고의'라 함은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감히 이것을 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한편 과실이라 함은 마땅히 하여야 할 주의 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 을 말한다.

'고의'·'과실'은 적극적인 성립요건으로, 그 입증책임은 불법행 위 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몰개성· 익명성의 현대사회에서 타인의 주관적 사정을 입증한다는 것은 실제로 매우 곤란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행위가 행하여진 상황을 밝힘으로써 간접적으로 반증이 없는 한 과실이 입증된 것으로 한다면, 그 가해상황이 특수한 경우에는 공평의 원칙을 가미하여 과실의 추정이 이루어 지기도 한다. 즉 가해자 (피고)가 자기에게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인정되어 있다. 여러 특수한 불법행위에는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이 가해자에게 轉換되어 있 다. 그러므로 가해자는 그만큼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어 가해자 쪽에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하게 되는 관계이다.

타인을 이용하여 어느 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그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같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그 책임이 있다.

한편, 사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보도케 한 경우

에도 본죄가 성립하여 간접정범에 의해서도 범해될 수 있다.

사례 1) 기사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없어

「...기사가 그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취재과정에서 그 내용 이 진실하다고 믿는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점에 관하여 보면, ...기사를 취재한...기자인 소외 ○○○는...시경수사과 기자실에서 수사과 경제계 담당수사관인...로 부터 보도자료를 배포받고...그런데 위 보도자료 에 의하면 원고를 포함한 피의자들에게 적용된 죄명은 사문서위조, 동행 사, 여권위반법이고 사기죄는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수배되었 다거나 미국으로 도피하였다는 내용은 없으며, 토폴성적표위조의 범죄사실 은 원고가 아니라 소외 ○○○등에 대한 범죄사실인 사실, 위 기자들은 모 두 주식회사 코리아 아카데미의 사무실이나 직원들을 상대로 직접 취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는 원고의 집에 직접 전화를 하여 보 지도 아니하고 위 각 기사를 작성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취재기자들 이 위 각 기사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 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각 소속 기자들의 위와 같은 취재를 토대로 위 각 기사를 그들의 신문·잡지 등에 게재·배포한 것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가 된다할 것이다...」 * 필자 주:4개 일간지 피고사들은 각 1천만원씩 총 4천만원의 손해배당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서울민사지법 1992. 9. 8. 선고 91가합 78412)

사례 2) 취재 내용을 부인했으나 더 이상의 사실여부 미확인, 진실이라 고 믿는 데 상당한 이유가 없어

「...피고 ○○○가 위 기사의 보도에 앞서 원고 ○○○등에게 그 내용의 확인을 구한 결과 위 금원들은 촌지로 받은 것이 아니라 광고비와 연합화 보의 판매대금으로 받은 것이며,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으니 필

요하면 확인해도 좋다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더 이상 사실여부에 관한 확인조치를 취한 바 없이 위 보도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위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면책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 1천만원씩(* 총3천만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서울민사지법 1992. 7. 29. 선고 92가합 3033)

사례 3) 인격을 비방하는 표현이 있어 공익을 위한 보도가 아니고, 진실성이 결여

「...변호사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인물에 대한 평가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평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 사건수기는 그 내용과 기술방법으로 보아 원고의 인격을 비방하는 인신공격의 표현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어 그 수기의 게재가 오로지 공익을 위한 의도로서 행한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진실성이 결여된 점은 위 수기의 제목 및 표현내용과 문면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바이다.<상고를 기각하여 1심 위자료 1천만원이 확정됨>,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카다 29)

사례 4) 소문을 기사화하여 명예를 훼손, 피고들이 무죄를 입증하지 못해, 공동 불법행위자로 연대하여 위자료 지급명령

「...피고 ○○○은 비록 이 사건 마드모아젤지에 실린 기사의 작성이나 게재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위 잡지의 발행인겸 편집인으로 서 위 잡지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가 실리지 않도록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의 위와 같은 기사가 실리도록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 ○○○, ○○○은 위 잡지의 주간 또는 기자로서 위 잡지에 기사를 취재하고 게재

함에 있어 그 기사가 공익에 관련된 것으로서 진실인지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를 신중히 검토한 다음 이를 잡지에 게재하도록 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또 피고 ○○○은 '여성○○'지의 기자인 소의 ○○에게 위와 같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기사화되게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위 기사의 내용에 관하여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며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 또는 이를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 사건에서, 결국 피고들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부도덕한 소문을 기사화하여 미혼여성인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과실이 있으니 잡지의 발행인, 주간 그리고 취재기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 (서울고등법원 1989. 11. 29. 선고 89나 5158)

사례 5) 신문, 잡지 등에 의한 일련의 보도를 통하여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해서, 위자료 1천만원 지급명령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신문, 잡지 등에 의한 일련의 보도를 통하여 유부녀로서의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고 나아가 원고와 소의 김○○ 간의 결혼생활의 파탄, 만성 위염 등의 발생에도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겪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써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금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서울민사지법 1991. 4. 17. 선고 90가합 3961)

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민법 제764조는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근까지 법원은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사죄광고의 게재를 명했고 학설 또한 이에 따랐으나, 헌법재판소는 1991년 4월 1일에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사례 1)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의 포함은 위헌

「...민법 제764조의 적용에 있어서도 사죄광고를 구하는 판결이 아니고도 1)가해자의 비용으로 그가 패소한 민사손해배상판결의 신문·잡지 등에 게재, 2)형사명예훼손죄의 유죄판결의 신문·잡지 등에 게재, 3)명예훼손기사의 취소광고 등의 방법을 상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사죄광고만이 명예회복에 유일무이한 수단이 아니라고 한다면 구태여 가해자에게 양심표명의 강제내지 굴욕감수를 강요하는 사죄광고제도는 어디까지나 과도한 것이며 또한 불필요한 국민의 기본권의 제한이다. ...」, 「...민법 제764조(1958. 2. 22. 법률 제471호)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헌법재판소, 1991. 4. 1. 결정 89헌마 160)

사례 2)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패소판결내용'을 방송

「...원고는 피고공사가 위와 같이 원고의 위 강연을 20분 삭제한 채 방영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적당한 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인 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공사 제2텔레비전 일요일 오후 7시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도입부에 별지 제1목록 1기재와 같은 내용을 같은 목록 2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방송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제1목록>

1. 방송내용

본 방송국이 1989. 10. 29. 19:00 「21세기 강좌」프로그램에서 방영한 서울대학교 한상진 교수의 「민주화의 길」강의는 60분내용으로 녹화되었으나 지나친 편집으로 20분간의 강의 내용이 삭제된 채 40분 내용만 실제로 방송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본 방송국은 법원으로부터 「위 20분간의 강의 내용의 삭제로 말미암아 한상진 교수가 21세기의 주역으로 등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민의 개념, 역할 등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여 중민이론가로서의 한상진 교수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2. 방송방식

위 1항 기재 위 두 문단을 각 독립적인 프레임으로 하되 매 프레임을 30초간 방송, 1회 모두 1분씩 연속하여 2주에 걸쳐 총 2회 방영한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2. 5. 14. 선고 90가합 1404)

사례 3) 2천만원의 위자료 지급과 패소판결 내용을 게재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금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고, 한편 원고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판결확정 후 처음 발간되는 주간 ○○에 별지 1. 기재 공고문을 각 게재함이 상당하다.

<별지 1. 공고문>

본사는 1992. 10.6자 제1171호 주간○○의 34면까지 「○○○ 의원은 재산가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법원에서 본사는 「위 기사에서 ○○○ 의원에 대한 현재의 재산상태와 인권변호사로서의 활동이 과장되어 있다, 요트타기를 즐겼다, 노사분규과정에서 이득을 취하였다 라는 내용의 일부 사실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보도함으로써 ○○○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로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민사지법 1992. 12. 4. 선고 91가합 82923)

나. 언론사의 면책사유

1). 정정보도청구의 경우

가) 게재거부

언론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정보도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 ·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례 1) '피해를 입은 자라고 할 수 없어'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

「...피해를 입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보도내용에 지명되거나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명백히 인정되어 그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하여 반론 내지 반박을 게재할 이익이 있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인데 위 기사의 보도내용에 의하면 단순히 「장교」라고만 보도되어 있을 뿐이므로... 신청인은 위 기사로 피해를 입은 자라 할 수 없어 정정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피해자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언론중재규칙 제17조 1항에 따라 주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과 같이 결정한다.(91대구중재 3)

사례 2)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내용'에 관한 정정청구는 정당한 이익이 없어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 중에는 정정보도에 기재될 내용과 원문기사에 보도된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6.12.23. 선고 86다카 818)

사례 3)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 「...신청인의 주장(필자 주:사회면 일기예보란의 우리나라 지도에 북한 지역이 남한 지역보다 작게 그려져 있는 바, 이는 사실에 반할 뿐만 아니라 통일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와같이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을 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각하(서울민사지법 1991.4.3. 90카 110595)

사례 4) '상당한 반론권을 행사'해서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이 사건 보도는 신청인의 사전 동의하에 대담등을 통해 신청인의 교육활동에 대한 사실보도에 관한 반박대담장면을 방영함으로써 신청인의 입장과 주장을 보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후 신청인을 자신이 방영하는 시사토론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문제된 신청인의 교육활동에 대한 반박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신청인은 이를 통하여 위 보도에 대한 반론권으로서 이 사건 신청취지.....에 해당하는 내용의 반박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것이고,.....결국 이와 같이 신청인이 이미 이 사건 사실적 보도에 대하여 상당한 반론권을 행사한 이상 신청인의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서울지법 남부지원 1992.2.20, 선고 89카 8917)

나) 제한 사항

정정보도의 내용과 형식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제한을 받는다.

(1) 정정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2) 정정보도의 내용은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게재할 수 없으며 정정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 (3) 추후보도의 내용은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한다.

다) 정당행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기사의 경우에는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사례 1) 공개회의내용에 관한 사실보도의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아, 정정보도

「...공개회의 또는 공개재판절차에서 취재한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공개회의 또는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보도의 형식으로 보도하지 아니하고 언론기관이 스스로 지득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경우에는 위 법조항에서 규정한 제외례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6.1.28. 선고 95다카 1973)

2) 명예훼손의 경우

가) 일반적 위법성의 조각사유

● 피해자의 승락

명예는 그 법익주체가 처분할 수 있는 개인적 법익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승락이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 . 정당행위

사실의 적시가 법령에 의하거나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신문, 라디오, TV등의 보도기관의 보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범위내에서 정당한 업무행위가 된다.

학술 또는 예술작품에 대한 공정한 논평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단, 논평이 피논평자에 관련된 허위사실을 기초로 하여 행해졌을 때에는 면책되지 않는다.

사례 1) 평론의 공정성이 인정되어 면책

「...사건보도와 논평은 사실의 진실성이 인정되고, 비록 원고의 입장과 행동이 피고의 사실에서 충분히 이해되고 동조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평론의 공정성 또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비록 이로써 원고의 명예가 다소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면책된다 할 것이다...」(서울남부지원 1990.10.12.선고 89가합 18505)

나) 사실증명에 의한 위법성 조각사유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진실성

적시된 사실은 진실한 사실임을 요한다. 여기에서 진실된 사실은 세부에서 다소 합치하지 아니하거나 약간의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그 중요부분에서 진실과 합치하여 전체로서 진실하다고 볼 수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1985.9.26.선고 4291형상 323)

사례 1) '진실하다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면책

「...본건 기사를 취재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으로 부터 위 장애인들의 진술의 개략을 듣고, 실제 위 농성현장에 임하여 위 장애인들로부터 그 주장을 청취한 후 그에 대한 확신을 굳게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본건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서 관련자들이 본건기사가 진실하다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할 것이고, 이 점에 있어 원고에 대한 피고의 명예훼손은 그 책임이 조각되어 본건 기사에 의한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서울민사지법 1984.4.11.선고 82가합 4734)

사례 2) 전과가 잘못 기재된 보도자료를 배포해 보도케 한 국가는 위자료 1천 만원을 지급하고, 언론사들의 보도행위에는 불법행위가 없다.

「...위 황○○로서는 위 피의사실에 관하여 신문사 기자들에게 위 보도자료를 배부, 발표함에 있어 위 보도자료가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 점검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원고가 전과 7범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위 보도자료를 그대로 배부, 발표하여 그것이 도하 각 신문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한 경찰사무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경찰국 소속의 공무원인 위 황○○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나, 한편 나머지 피고들은 위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경찰국의 공식발표를 위 보도자료에 기재된 대로 보도한 이상 그 보도내용 중에 원고가 전과 7범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와 같이 믿는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할 것이어서 위 피고들에게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관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보도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그 위자료액은 금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서울민사지법 1988.4.29.선고 87가 합 3739)

● 공익성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사회 또는 다수인 일반의 이익을 말한다. 따라서 본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되는 제309조 제1항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는 허위의 사실을 진실이라고 오신하고 공익을 위하여 적시한 경우이다. 대법원은 「행위자가 비록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확신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된 정도의 객관적 상황이 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62.5.17. 61형상 12)

사례 1) 사실의 진실성이 인정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보도하여 면책

「...이 사건 사실보도와 논평은 사실의 진실성이 인정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보도되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의 입장과 교육활동이 원고가 의도한 바와는 달리 보도되었다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면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서울지법 남부지원 1992. 2.20. 선고 89가합 13975)

● 거증책임

진실성·공정성의 증명은 소송법상의 문제로서 거증책임을 피고인이 부담한다는 거증책임 전환설이 통설이다.

다) 반의사불벌죄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다. 따라

서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소추할 수 있지만, 공소제기이후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의사표시의 철회 등은 제1심판결 선고전에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62.3.8. 선고 4293형상 1)

5. 맺는말

앞에서 언론보도와 깊게 관련있는 법들을 간략하게 살펴 보았는데, 그 관련 법들이 생각보다 많고 복잡함을 엿볼 수 있다. 언론의 정기능이 민주사회의 요체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언론사는 언론의 자유가 그들의 전유물이고 성역인양 오도하여 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언론계는 열악한 언론환경을 구실삼아 언론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왜곡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파하였고, 대부분의 국민 즉 정보수용자들은 그렇게 믿어 왔다.

그런데 90년대에 들어와서 언론환경의 변화로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의 소리가 높아졌고, 이를 의식한 듯 언론사들은 경쟁적으로 독자모니터제, 음브즈만제, 독자란 확충 등을 통하여 정보수용자들과 쌍방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고 있다.

정보수용자운동은 여러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성공할 수 있는데 그 여건이 만족스러운 정도로 성숙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

나, 사회발전에 따른 국민의 법의식 제고·언론사의 책임의식 인식·정부의 언론자유 신장정책 등으로 새로운 풍토를 맞고 있다. 따라서 운동의 확산과 성공을 위해 구성원들은 우선 언론의 실체를 파악해야 할 것인데,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언론관련 법제이다. 왜냐하면 주장에 설득력과 합법성이 결여되어 보이면, 그 주장이 아무리 진실이라 해도 정당성을 인정받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정보수용자운동은 언론에 대한 국민권익의 “제자리 찾기 운동”이라고 풀이되는데, 이 운동의 성공이야 말로 정부, 언론, 그리고 국민이 균형의 조화를 이루어 건강한 민주사회를 이루는 지름길을 마련해 줄 것이다.

<참 고 문 헌>

- 郭潤直. 債權論(民法講義 IV.) 서울: 박영사, 1989
 權寧星. 憲法學概論. 서울: 법문사, 1989
 金曾漢. 債權各論(民法講義 IV.) 서울: 박영사, 1989
 李銀榮. 債權各論. 서울: 박영사, 1993
 金哲洙. 新高 憲法學概論. 서울: 박영사, 1989
 李在祚. 刑法各論(全訂版) 서울: 박영사, 1993.
 鄭盛根. 刑法各論(上) 서울: 법문사, 1989
 鄭榮錫. 刑法各論(第千全訂版) 서울: 법문사, 1982
 김정탁, “새로운 환경에서의 변화하는 수용자” 제4회 최병우 기자 기념심포지엄 「언론의 환경변화와 새로운 방향모색」 1992. 10.

관훈클럽·한국언론학회, p.15.

- 김기태. “신문독자운동 사례연구” 저널리즘 1991. 봄, pp.233-240 참조.
 拙稿. 한국일간신문의 오보와 그 구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언론중재위원회. 국내언론관계판례집 제1집, 1990
 언론중재위원회. 1989년도 연차보고서 1990
 언론중재위원회. 1990년도 연차보고서 1991
 “ ” ” 1992